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993. 9. 16

교육사회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년 9월 4일

○ 회부일자 : 1993년 9월 6일

다. 상정일자 : 제 94회 임시회

○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 9. 14) 상정,

○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1993. 9. 1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 신 태 당)

가. 제 안 이 유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개정으로 검사항목이 종전 32개 항목에서 36개 항목으로 증가되었으며, 수질분석 방법이 육안비색법·적정법 등에서 GC.AA를 이용한 정밀분석법으로 개정되어 검사기간의 대폭 증가와 각급학교·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 요 골 자

○ 검사기간 변경 : 현행 7일 → 개정 14일

○ 검사항목 추가 및 수수료 부과

- 카바릴	4,000원
- I.I.I - 트리클로로에탄	4,000원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4,000원
- 트리클로로에틸렌	4,000원

○ 각급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 변경

- 일반 음용수검사 수수료의 50%로 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 영 만)

수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검사대상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검사업무의 여건이 크게 변화 됨에 따라 검사항목을 32개에서 36개
항목으로 늘이고, 분석방법에 있어서도 육안시비법·적정법 등에서
GC(가스크로마토그리피), AA(원자흡광장치)를 이용한 정밀분석법으로
바꾸는 등 보사부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이 지난 92년 12월
1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검사기간이 현행 7일에서 14일로 연장되고,
또한 4개 검사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수수료를 항목당 4,000원씩 추가
하여 전체 검사비용이 87,520원에서 103,520원으로 인상되었음.

한편 각급학교나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대폭 상향조정(6,000 → 51,760)하려는 것은 전국 시,도간 형평유지
문제 등을 고려하는 등, 보사부 규칙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금
정적으로 사료되나,

조례의 자구수정에 있어서 기존 조례관리에 미흡했고, 검사기간 연장
에 따른 민원인 불편해소 방안, 각급학교 및 군부대 수수료 대폭인상

에 따른 부직용과 절감 대책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조례 제9조 수수료감면 조항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관해서도 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검사기간 연장의 부당성과 연장에 따른 민원인
의 불편해소 방안.

5. 토 론 요 지 : " 별첨 수정안 내용과 같음 "

6. 수정안 요 지

조례 제9조 (수수료감면) 조항에서 감면 범위가 현실에 부적합하여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을 삭제하여 "국가기관이 그 기능
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등을 의뢰할 경우"와로 수정하고 행
정사무감사 등을 고려하여 "의회에서 의정 활동상 필요한 경우"를
신설토록 함.

7. 심 사 결 과 : " 수정안 가결 "

8. 기타 필요한 사항 : " 없 음 "

9.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나. 수정안조문 대비표 1부.

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라.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